

콜라겐 영업비밀 기술자료 무단유출 사안 - 사용여부 판단, 사용금지, 폐기명령, 손해배

상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3나10211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공개'는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2) 따라서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비밀 유지약정 등에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영업비밀의 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알리거나 제3자 보관 컴퓨터에 저

장함으로써 이를 '공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영업비밀을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무단 반출한 영업비밀의 공개 여부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무단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은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모두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회사의 근로자가 비밀유지 의무에 위배하여 무단으로 반출하여 공개한 영업비밀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취득한 행위(공개 대상이 됨으로써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내지 업무상배임에 가공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4)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이하 '영업비밀 등'이라 한다)을 부정 취득한 자는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

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등 보유

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6) 한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2) 등 참조).

(7)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

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
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첨부: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3나10211 판결

기술유출, 영업비밀, 특허침해, 부정경쟁, 손해배상, 형사고소, 민사소송,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